
1381 해외인증자료



작성일자 2026.07.06. 기준,
무단 도용 배포 금지

(문의)

1600w 제품 (약 1~2마력) 제품의 모터와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전동 롤 스크린 형태로 문을 제작할 경우 기구물을 제외한 모터와 컨트롤러가 FCC 인증 대상인지 문의

(답변)

아래에는 해외 원문 문서를 번역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1381인증·표준정보센터는 원칙적으로 해외원문 문서의 번역서비스를 하지 않으며, 간혹 경우에 따라 일부 내용을 번역할 경우에도 그 번역의 완전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문서 번역은 업체의 몫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문서 내 링크 또는 문서 하단 ※ 자료 출처의 링크를 통해 원문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품에 해당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제품 사양을 근거로 업체에서 직접 판단하시거나 관련 기관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저희 1381인증·표준정보센터는 국내/해외의 법률적 유권해석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 개요

FCC인증 여부는 제품의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전동모터

일반적인 AC 또는 DC 전동모터는 무선 송신 기능이나 디지털 제어회로가 없는 경우 FCC 인증 대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모터 내부에 인버터, 전자제어회로 또는 무선통신 기능(Bluetooth, Wi-Fi 등)이 내장된 경우에는 FCC 규정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컨트롤러

전동문 제어용 컨트롤러는 MCU 등 디지털 회로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FCC Part 15(비의도성 방사기, Unintentional Radiator)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무선 리모컨 수신기, Wi-Fi, Bluetooth 등의 무선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면 FCC Certification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추가사항

모터 종류(AC 유도모터, BLDC, DC 브러시 등), 컨트롤러에 MCU(마이크로컨트롤러)가 있는지, 인버터(VFD)가 포함되어 있는지, Wi-Fi, Bluetooth, RF 리모컨 수신기 등 무선 기능이 있는지, 미국으로 모터와 컨트롤러를 별도 판매하는지, 아니면 전동문 완제품으로 판매하는지 등의 상세정보가 있으면 FCC 적용 대상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귀사제품 스펙에 따라 절차나 인증 대상여부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귀사제품의 사양을 근거로 담당인증기관과 기술적인 상담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연방규정

FCC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아래 규정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CC Part 15 (47 CFR Part 15)

<https://www.ecfr.gov/current/title-47/chapter-I/subchapter-A/part-15>

§15.3 : Definitions.

<https://www.ecfr.gov/current/title-47/section-15.3>

§15.101 : Equipment authorization of unintentional radiators.

<https://www.ecfr.gov/current/title-47/section-15.101>

§15.107 : Conducted limits

<https://www.ecfr.gov/current/title-47/section-15.107>

§15.109 : Radiated emission limits.

<https://www.ecfr.gov/current/title-47/section-15.109>

; 가장 중요한 규정

디지털 회로가 있는 컨트롤러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규정입니다.

47 CFR §15.3 (Definitions)

47 CFR §15.101 (Equipment authorization of unintentional radiators)

이 두 조항만 확인해도 모터와 컨트롤러가 FCC 적용 대상인지를 1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적용 대상이라면 시험 기준(§15.107, §15.109)과 인증 절차를 검토하면 됩니다.

ANSI C63.4

FCC Part 15 시험 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험방법 표준입니다.

법규 자체는 아니지만 시험소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시험 규격입니다.

<https://standards.ieee.org/ieee/C63.4/5841/>

<https://www.kssn.net/for/detail.do?itemNo=F012010005841>

▶ 관련기관

귀사 제품이 정확히 어떤 FCC절차에 적용되는지는 귀사제품 사양을 근거로 해당 인증기관의 검토가 필요한 전문적인 부분입니다.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는 기관으로 산업통상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지정 시험인증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를 안내해드리오니 아래의 연락처로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자세한 정보 및 시료를 보내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일반 사기업이 아닌 공공 기관 성격의 인증기관으로는 아래의 3개 기관이 대표적입니다.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1577-0091, www.ktr.or.kr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 080-808-0114, www.ktl.re.kr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 1899-7654, www.ktc.re.kr

국제인증기관 한국 지사

그 외에 국내에 진출해 있는 국제인증기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소재한 대표적인 국제인증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만 기재)

- Bureau Veritas / 02-555-8922 / www.bureauveritas.co.kr

- Intertek / 02-567-7474 / <http://www.intertek.co.kr>
- SGS / 02-709-4652 / <http://www.sgsgroup.kr/>
- TÜV SÜD / 02-3215-1100 / www.tuv-sud.kr
- TÜV Rheinland / 02-860-9860 / <https://www.tuv.com/korea/ko/>
- Nemko / 031-330-1700 / <https://www.nemko.com/ko>
- UL Solutions <https://korea.ul.com/>
- 기타

※ 업무대행기관

상세 실무(비용, 소요기간)와 관련된 문의는 업무를 대행하는 인증기관 및 컨설팅업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대행기관들은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기관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컨설팅기관검색
<https://www.smes.go.kr/globalcerti/info/concList.do?key=9093>



▶ 유의사항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국가 강제인증보다는 각 주별 규제 및 민간 인증이 통용되는 형태로 사전인증제도보다는 리콜/처벌 등의 엄격한 사후 관리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품의 안전과 품질에 대해 보증할 책임은 제조자/수입업자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시 세관에서 문제가 없었더라도 사후에 문제 발생 시 매우 엄격한 민/형사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주별규제

또한 미국은 50개 주(州)로 이루어진 국가로 연방법과 주법이 공존하고 있으며 주별로 각종 민간기관의 실험·연구 등으로 기준화 및 규격화된 규격을 채택하여 강제하거나 주별 규제를 따로 두고 있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민간/자율인증이더라도 지역에 따라 강제인증과 같이 통용될 수 있으며 해당품목의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업계 내 강제처럼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주마다 규제여부 및 내용이 상이하므로 주별 규제 및 임의인증 적용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이 경우 가장 정확한 방법은 현지 바이어/수입업체를 통해 현지에서 요구되는 인증이나 규제사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희 1381인증표준콜센터는 국가차원의 규제에 대해서만 대응이 가능하며, 주별 규제는 저희 1381인증표준콜센터의 업무 대응 범위를 벗어나므로 해당 건에 대해서는 직접 현지 수입업체 등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례로 캘리포니아는 환경규제인 The Proposition 65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물질 자체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특정물질을 사용한 제품에 대하여 경고라벨을 부착하도록 하는 규제입니다.

예) OEHTA > Proposition 65

<https://oehtta.ca.gov/proposition-65>

OEHTA > The Proposition 65 List

<https://oehtta.ca.gov/proposition-65/proposition-65-list>

TUV SUD > California Proposition 65 > 캘리포니아 법령 65의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

<https://www.tuv-sud.kr/kr-kr/activity/testing-product-certification/california-proposition-65>

▶ 임의인증

강제 인증이 없어도 민간단체에 의한 임의인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요구사항, 규제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용도의 여타 강제 인증과는 달리 민간 임의인증은 임의, 자율인증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제조자가 자율적으로 받거나 현지 수입자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업체 자체적으로 제품을 증명하는 품질인증이므로 자율적으로 여건에 맞는 규격을 선택하여 시험하신 후 DoC를 발행하시거나 해당 규격에 대한 인증제도가 있을 경우 시험 후 해당 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DoC는 말 그대로 업체 본인이 선언하는 것이므로 특정한 양식은 없으며 온라인상에 게재된 DoC form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처

저희 1381인증표준콜센터는 수출관련 인증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인증사항 이외의 세금 및 HS Code는 현지 세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내해드리는 내용은 소비자제품에 대한 미국 연방규제(강제)를 중점으로 두고 있으며 이외에 주별 규제와 민간 사기업 규정(예: 아마존)은 저희 업무범위를 벗어나므로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현지 수입업체 등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 센터의 해외인증조사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제조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수출활동과 관련이 없는 학술·학습·연구·자료수집 목적의 문의, 해당조사를 통해 수익활동을 하는 사설 컨설팅, 대행기관 등으로부터의 문의는 해당 서비스 대상이 아니므로 대응이 불가능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위 내용은 인터넷 상에서 무료로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검색한 결과로써 최신 현지 정보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미국 현지의 수입업체 또는 관련인증기관, 현지 KOTRA 무역관, 컨설팅기관 등의 다양한 루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지 동향이나 인증 신뢰도, 소비자 선호도 같은 최신 현지정보는 해당지역 업계 및 소비자에게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현지 바이어/수입업자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하며 KOTRA 현지무역관에 수출관련 무역정보 및 시장정보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KOTRA 북미지역본부: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13755>

뉴욕무역관(미국) / 달라스무역관(미국) / 디트로이트무역관(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미국) / 마이애미무역관(미국) / 시카고무역관(미국) / 실리콘밸리무역관(미국) / 워싱턴무역관(미국)

또한 KOTRA 홈페이지의 문의/상담 메뉴를 통해 상세 내용에 대해 글로벌지역전문가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글로벌지역전문가의 답변이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답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이용 방법: KOTRA 홈페이지(회원 가입 필요) ⇒ ‘문의·상담’ 메뉴 ⇒ 전화, 챗봇, 온라인 상담 선택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6014>

▶ 한국무역협회

- 무역애로상담 및 무역현장컨설팅 1566-5114

<https://membership.kita.net/coc/problem/serviceInformation.do>

- Trade Pro 디지털 무역상담

<https://kita.net/tradePro/tradeProMain/tradeProMain.do>

▶ 규격

규격은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사거나 한국표준정보망 (KSSN)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관련 규격 파악

- 규격 구입: 한국표준정보망(www.kssn.net)

▶ 시험기관

한국인정기구(KOLAS)인정 국내 시험소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에서는 특정 기관이 수행하는 시험/교정 등의 세부 항목에 대해 인정하고 해당 분야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각 시험기관의 적격성을 인정하며, 공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합니다. (즉, 특정 규격/시험에 대해 KOLAS 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이 KOLAS 시험기관입니다.)

- 한국인정기구 KOLAS > 시험기관검색

<https://www.knab.go.kr/usr/inf/srh/InfoTestInsttSearchList.do>

비 KOLAS 기관

위의 KOLAS 기관이 아니어도 시험이 가능한 기관은 많으며, 미국 수출이 목적이라면 미국계 시험기관이나 미국 내 시험기관 또는 글로벌 시험인증기관 등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제인증기관 한국 지사

그 외에 국내에 진출해 있는 국제인증기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소재한 대표적인 국제인증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만 기재)

- Bureau Veritas / 02-555-8922 / www.bureauveritas.co.kr
- Intertek / 02-567-7474 / <http://www.intertek.co.kr>
- SGS / 02-709-4652 / <http://www.sgsgroup.kr/>
- TÜV SÜD / 02-3215-1100 / www.tuv-sud.kr
- TÜV Rheinland / 02-860-9860 / <https://www.tuv.com/korea/ko/>
- Nemko / 031-330-1700 / <https://www.nemko.com/ko>
- UL Solutions <https://korea.ul.com/>
- 기타

※ 업무대행기관

상세 실무(비용, 소요기간)와 관련된 문의는 업무를 대행하는 인증기관 및 컨설팅업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대행기관들은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기관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컨설팅기관검색
<https://www.smes.go.kr/globalcerti/info/concList.do?key=9093>

국내 일반 사기업이 아닌 공공 기관 성격의 인증기관으로는 아래의 3개 기관이 대표적입니다.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1577-0091, www.ktr.or.kr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 080-808-0114, www.ktl.re.kr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 1899-7654, www.ktc.re.kr

지원 사업

※ 각 시도별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원프로그램도 있으니 해당 지역의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마당 비즈인포 > 지원사업 공고 > 수출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list.do>

- 기업마당 비즈인포 > [경기] 시흥시 2026년 해외 쇼핑몰(온라인) 입점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https://www.bizinfo.go.kr/si/si/selectSIA200Detail.do?hashCode=07&rowSel=6&row=15&page=1&cat=&schPblancDir=&schJndCodeTy=&schWdyAt=&schAreaDetailCode=&schEndAt=N&orderGr=&sort=&preKeyword=&condition=searchPblancNode&condition1=AND&keyword=&plancId=PHILN_00000000119929

- 기업마당 비즈인포 > [경남] 2026년 베트남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소비재 수출 초보기업 O2O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https://www.bizinfo.go.kr/si/si/selectSIA200Detail.do?hashCode=07&rowSel=6&row=15&page=1&cat=&schPblancDir=&schJndCodeTy=&schWdyAt=&schAreaDetailCode=&schEndAt=N&orderGr=&sort=&preKeyword=&condition=searchPblancNode&condition1=AND&keyword=&plancId=PHILN_00000000119929

※ 해외조달정보 관련 문의

- 해외조달정보센터

<https://globalkoreamarket.go.kr:8843/gpass/index.do>

- 해외조달정보센터 > 해외조달정보 > 해외입찰정보

<https://globalkoreamarket.go.kr:8843/bbs/selectBoardList.do?boardId=GPASS004>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중소기업의 경우, 국내 유관기관의 각종 해외인증비용 지원 사업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mes.go.kr/exportcenter/>

- 2026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https://www.smes.go.kr/globalcerti/main.do>

※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2026년 일반지원 1차 참여기업 모집’과 ‘2026년 전략지원 참여기업 모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로 공고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지원) 1차 참여기업 모집공고/2026년 전략지원 참여기업 모집공고

<https://www.smes.go.kr/globalcerti/info/ktrInfo.do?key=9093>

관리기관	전화번호	FAX	주소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	02)2164-0173~8	02)507-8118	(13810) 경기 과천시 교육원로 98, 본관동 303호 (수출인증지원센터)

※ 주 의 !

상기 자료는 온라인 정보에 근거하여 정리한 내용으로 귀사에서 본 자료를 활용할 시 정확한 사실 여부를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및 소요기간은 귀사제품에 적용되는 시험항목, 시험기관, 귀사의 관련서류제출 및 대응 속도에 따라 변수가 있는 사안이므로 해당 인증을 진행하는 인증기관/시험기관의 실무자와 협의하여야합니다.

귀사 제품의 사양과 함께 해당 인증기관에 컨택하여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닌 단순 참고자료이므로 각종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효력이 없습니다. 1381콜센터에서 제공한 정보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우리 센터에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이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자료는 무단 수정/배포 불가합니다.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작성일자 : 2026.07.06.]